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제3판, 1쇄) 정오표 최종본(2017. 8. 14. 작성)

- ※ 이후 발견된 정오사항은 12월경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 저자 金柳香

★ 제44면 박스 '상대설'우측 4줄 변경

-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보호영역을 확정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 개인의 기본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한일지라도

★ 제124면 마지막 박스판례 우측 주문 수정

- ▶위헌 → ▶기각

★ 제172면 본문 1줄 수정

- 통신의 자유란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말하는 것으로, → 통신의 자유란 자유로운 통신의 보장과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즉

★ 제303면 첫 번째 박스판례 우측 주문 수정

- ▶헌법불합치 → ▶합헌

★ 제321면 본문 밑에서 3줄 변경

- 그런데 개별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면서 어떠한 예외도~

★ 제374면 2번째 박스판례 우측 주문 수정

- ▶헌법불합치 → ▶합헌

★ 제379면 '(1) 의의' 부분 맨 뒤에 추가

-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라는 판시도 하였다(2009.3.26. 2007헌마359).

- 공 백 -

★ 제438면 3.항 1줄 내용 변경

- 어느 견해도 그 자체로서는 주문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 제518면 목차 및 내용 변경

- 'C. 보충성의 원칙' → 'B. 보충성의 원칙'
- 'B. 행정입법부작용의 정당한 사유' → '(나) 행정입법부작용의 정당한 사유'
'(나) 행정입법부작용의 정당한 사유' 내용 1~2줄 수정
행정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행정입법부작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을 할 수는 없다.
- '(나) 행정입법부작용에 대하여 위헌확인한 판례' → '(다) 행정입법부작용에 대하여 위헌확인한 판례'

★ 제534면 세 번째 박스 판례 제목 추가

- 수행자와 헌법소원대리인 접견시 녹음, 녹화행위 근거조항

★ 제630면 (2)항 1~2줄 내용 변경

- 오늘날 국민주권은 스스로 의사능력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 소유와 행사가 분리되지 않는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본다.

★ 제749면 첫 박스 '재선거' 부분 우측 마지막줄

- "(임개개시 전후 불문)" → "(임기개시 전후 불문)"

★ 제790면 목차 변경

- F → E / G → F

★ 제799면 제53조 제1항 개정

-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최(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6.12.16]

- 공 백 -

★ 제800면 B. ⑧항 수정

- ⑧ 정보위원회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에 월 1회 이상 개최한다(제53조 제1항).

★ 제800면 E목차 4줄 수정

- 그리고 폐회중에는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 그리고 3월·5월(폐회중에 한정)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 제802면 박스 '공개여부' - '특별위원회' - '상설' 부분 수정

- 공개원칙(윤리위는 비공개) → 공개원칙(윤리위 징계 비공개원칙)

★ 제858면 박스 '인사청문회의 실시기간' 우측 3줄 수정

- (국가정보원장 등에~) →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

★ 제923면 2. 목차 3줄 수정

- ~ 이를 통보한다. → ~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제948면 본문 4줄 개정

- 행정법원의 6종 → 행정법원·회생법원의 7종

정부조직법 [개정 2017.7.26.]

◇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나.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 공 백 -

◇ 교재수정

★ 제877면 제26조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 제877면 박스 ‘우리 역대 헌법상 권한대행’ 중 4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제921면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⑤ 삭제

★ 제922면 ‘2. 행정각부의 장의 이중적 지위’ 2문단 전제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함 +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전체 삭제

- 2017.7.26. 개정 정부조직법에서는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였다.

★ 제924면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② 삭제 + ‘2.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3~4줄 수정

- 2017.7.26. 개정된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회에는 행정각부의 장을 겸한 국무위원 18명이 있다.